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8

발의연월일: 2024. 6. 14.

발 의 자: 송옥주·정성호·윤종군

홍기원 • 백승아 • 이재관

한민수・황명선・박 정

이병진 • 이원택 • 한정애

이수진 • 박해철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을 육성·지원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)을 수립하도록 하고, 지자체가 추진하는 관련 시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하여 재정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기본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의 경우 농어촌 주민 등의 불편이나 도농 복합도시 내 읍·면·동 간의 불균형 해소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,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제도의 경우 재량사항일 뿐만 아니라 결과의 활용 또한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, 지자 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

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2항제9의2호 신설 및 제17조제2항 등). 법률 제 호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9호 중 "주민을 위한"을 "주민의 이동권 보장과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읍·면·동 간 대중교통 이용환경의 불 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

제17조제1항 중 "평가할 수 있다"를 "평가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해당"을 "평가결과에 따라"로, "우선적으로"를 "차등하여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2항제9호 및 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는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대중교통시책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)	제5조(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	②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농어촌 및 벽지 <u>주민을 위한</u>	9
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	권 보장과
관한 사항	
<u><신 설></u>	9의2.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읍
	·면·동 간 대중교통 이용환
	경의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
	<u>항</u>
10. ~ 14. (생 략)	10. ~ 14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7조(대중교통시책의 평가) ①	제17조(대중교통시책의 평가) ①
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	
체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	
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	
추진하는 대중교통시책(이하	
"대중교통시책"이라 한다)을 <u>평</u>	<u>평</u>
<u>가할 수 있다</u> .	<u>가하여야 한다</u> .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대중	②
교통시책의 <u>평가를 실시한 결</u>	<u>평가결과에 따라</u>
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	

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해당 지
방자치단체가 제12조 각호의
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우선적으</u>
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③ ~ ⑥ (새 랴)

<u>차등하여</u>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